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(2021.8.17. 개정, 2022.2.18. 시행)
 -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→ 제17조의5(안 제10조제3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- 아니한 → 았은(안 제2조)
 - 조속히 → 빠른 시일 내에(안 제3조)

- 자 → 사람, 호선한다 → 선출한다, 1회에 한하여 → 한차례만 (안 제5조)
- 예산의 범위 안에서 → 예산의 범위에서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지난 8월에 개정됨에 따라 안 제10조제3항을 수정하고,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0조제3항
 - 조례의 관련 법령인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3 → 제17조의5 조문변경 하였고,
 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
 - 안 제2조에서 ‘아니한’ → ‘않은’으로,
 - 안 제3조에서 ‘조속히’ → ‘빠른 시일 내에’로,
 - 안 제5조 ‘자’ → ‘사람’, ‘호선한다’ → ‘선출한다’, ‘1회에 한하여’ → ‘한차례만’으로,
 - 안 제11조 ‘예산의 범위 안에서’ → ‘예산의 범위에서’ 등으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음.

붙임: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